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63호
도시관리계획(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000호(2025.1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5.11.12.) 심의 결과(원안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교육첨단용지의 원활한 공급·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용도를 추가하여 변경 하고, 기능을 상실한 DMC 홍보관용지는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용도 폐지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암동 509-7 일원	1,690,17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 (1997.3.6)

I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기정 1,690,171.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100.0	
주택건설용지	기정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	15.7	
공동주택	기정 252,003.1	-	72,336.7	179,666.4	-	-	-	-	-	14.8	
주상복합	기정 9,285.3	-	-	-	9,285.3	-	-	-	-	0.5	
단독주택	기정 20.5	-	20.5	-	-	-	-	-	-	0.1	
근린생활시설	기정 4,781.4	1,101.9	-	3,679.5	-	-	-	-	-	0.3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공공시설용지	기정	1,424,081.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84.3	
도로	기정	459,520.3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1,120.6	27,630.0	-	27.2	
상업시설	기정	26,022.5	20,644.1	-	-	5,378.4	-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기정	34,184.5	-	-	-	34,184.5	-	-	-	-	2.0	2개소
업무시설	기정	150,931.4	12,029.5	-	-	138,901.9	-	-	-	-	8.9	
교육연구시설	기정	7,878.5	-	-	-	7,878.5	-	-	-	-	0.5	
방송시설	기정	34,270.1	-	-	-	34,270.1	-	-	-	-	2.0	2개소
주차장	기정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	0.6	4개소
광장	기정	2,863.5	468.6	-	-	-	-	-	2,394.9	-	0.2	2개소
공원	기정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	149,250.2	11.0	
녹지	기정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	4.5	완: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기정	1,257.0	-	-	-	-	1,257.0	-	-	-	0.1	1개소
공공청사	기정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	0.6	
학교	기정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기정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	1.3	4개소
종교시설	기정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기정	17,024.7	-	-	-	17,024.7	-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기정	9,456.5	-	-	-	-	9,456.5	-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3,917.0	-	-	316.0	-	-	3,601.0	-	-	0.2	
운동장및시장	기정	211,405.8	-	-	-	-	-	-	211,405.8	-	12.5	1개소
철도시설	기정	1,662.7	236.6	-	-	-	-	-	1,426.1	-	0.1	2개소
하수도시설	기정	3,000.3	-	-	-	89.9	-	2,910.4	-	-	0.2	
차고지	기정	6,901.6	-	-	-	-	6,901.6	-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기정	1,614.5	-	-	-	-	1,614.5	-	-	-	0.1	1개소
문화및집회업무시설	기정	35,212.8	35,212.8	-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기정	11,099.1	-	-	-	-	-	-	-	11,099.1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정	1,463.1	-	-	1,463.1	-	-	-	-	-	0.1	1개소
교육연구첨단업무시설	기정	15,232.7	-	-	-	15,232.7	-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기정	7,212.0	-	-	-	7,212.0	-	-	-	-	0.4	1개소
공동구	기정	512.6	512.6	-	-	-	-	-	-	-	0.1	1개소
유치원	기정	2,015.7	-	885.7	1,130.0	-	-	-	-	-	0.1	2개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90,171.6		1,690,171.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7.2	-	1,917.2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12.8	-	35,212.8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577,337.4	-	577,337.4	34.1	
	준주거지역	229,076.0	-	229,076.0	13.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5,465.0	-	425,465.0	25.2	
	중심상업지역	37,262.3	-	37,262.3	2.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83,900.9	-	383,900.9	22.7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상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암동 509-7일원	1,690,171.6	-	1,690,171.6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광역로	총계	기정	-	58(9)	17,584.7	459,520.3	10	3,54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3	319.0	1,120.6	1(2)	1,052.0	27,630.0	-	-	
	소계	기정	-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
대로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9(8)	7,672.2	228,566.2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1	80.0	89.7	1(2)	1,052.0	27,630.0	-	-	-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	-
	2류	기정	25 ~35	2(1)	1,112.0	44,318.8	1	744.0	32,773.9	-	-	-	-	-	-	-	-	-	-	-	-	1	80.0	89.7	(1)	288.0	11,455.2	-	-	-
중요도로	3류	기정	25 ~35	6(6)	5,365.2	134,630.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174.8	-	-	-
	소계	기정	-	19	5,305.0	104,74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	-	-	-
	1류	기정	15	10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
기타도로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소계	기정	-	9	847.0	6,713.5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1	99.0	814.7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362.3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1	99.0	814.7	-	-	-	-	-	-
3류	기정	8 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	-
소계	기정	-	19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	-
1류	기정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	-
2류	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	-
2류	기정	8 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	-
3류	기정	-	10	536.5	2,953.4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	-	-

주)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나)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도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등급	루트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광로	2	93	5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7-4	고양시덕면동 269	2,498 (1,838)	97,268.6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	-	-	-
기정	대로	1	1	3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49,616.5	-	-	-	-	80.0	-	-	49,536. 5	1,195	-	-	-	-	-	-	-	
기정	대로	2	20	3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32,773.9	-	-	-	-	-	-	-	-	-	-	-	(288)	11,455.2	-	-	
기정	대로	3	30	25 ~ 3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	(124)	4,577.8	-	-
기정	대로	3	32	3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상암동	은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24,590.6	-	-	-	-	-	-	-	(479)	8,011.0 (458)	16,579. 6	-	-	-	-	-	-	
기정	대로	3	1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	-	34,697. 4	1,330	-	-	-	-	640	11,679.0	-	-
기정	대로	3	2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상암동 56 (광로 2-93)	상암동 1-3 (대로 3-1)	944	23,843.4	-	-	-	250.9	-	-	-	944	23,592. 5	-	-	-	-	-	-	-	
기정	대로	3	3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상암동 405 (광로 2-93)	상암동 229-13 (대로 3-1)	940	24,261.9	-	-	-	-	122.7	940	24,139. 2	-	-	-	-	-	-	-	-	-	
기정	대로	3	4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 로	상암동 302-3 (대로 1-1)	상암동 292-1 (대로 3-1)	268	7,866.0	-	-	-	-	-	-	-	268	7,866.0	-	-	-	-	-	-	-	
기정	중로	1	40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6 (대로 3-1)	상암동 27-49 (대로 3-30)	257	5,406.1	257	5,406.1	-	-	-	-	-	-	-	-	-	-	-	-	-	-	
기정	중로	1	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73 (대로 3-2)	상암동 546 (대로 3-30)	489	10,388.0	-	-	489	10,388. 0	-	-	-	-	-	-	-	-	-	-	-	-	
기정	중로	1	2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98 (대로 3-2)	상암동 876 (대로 3-3)	164	4,494.2	-	-	-	-	-	-	164	4,494.2	-	-	-	-	-	-	-	-	
기정	중로	1	3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2-4 (대로 1-1)	상암동 251-10 (대로 3-1)	298	7,264.1	-	-	-	-	-	-	-	298	7,264.1	-	-	-	-	-	-	-	
기정	중로	1	4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85-2 (대로 3-3)	상암동 445-1 (중로 1-6)	1,089	22,597.9	-	-	-	-	1,089 9	-	-	-	-	-	-	-	-	-	-	-	
기정	중로	1	5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0-4 (중로 1-4)	상암동 301 (대로 1-1)	89	2,859.3	-	-	-	-	-	89	2,859.3	-	-	-	-	-	-	-	-	-	
기정	중로	1	6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542-1 (광로 2-93)	상암동 446 (대로 3-32)	607	12,564.6	-	-	-	-	-	607 6	-	-	-	-	-	-	-	-	-	-	
기정	중로	1	7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83-1	상암동 374-3	90	2,244.6	-	-	-	-	-	90	2,244.6	-	-	-	-	-	-	-	-	-	

구분	구도	구도 번호	구도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8	20	일반도로	도로 (중로1-4) 상암동 292-3 (대로3-4) 상암동 296담	94	2,354.5	-	-	-	-	-	94	2,354.5	-	-	-	-	-	-	-	-	-
기정	중로	1	9	20	일반도로	도로 (중로1-3) 상암동 258-1 (대로3-4) 상암동 256-1 (대로3-4)	297	5,533.4	-	-	-	-	-	297	5,533.4	-	-	-	-	-	-	-	-	-
기정	중로	1	10	20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 (중로1-3) 상암동 244-4 (대로3-4)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278	5,673.8	-	-	-	-	-	-	-	-	자전거도로 포함
기정	중로	1	11	20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 (중로1-3)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74	1,568.9	-	-	-	-	-	-	-	-	자전거도로 포함
기정	중로	2	404	15	일반도로	도로 (중로1-4) 상암동 1251 (중로1-126) 상암동 1271 (중로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5	15	일반도로	도로 (중로1-26) 상암동 1188 (중로1-126) 상암동 1178 (중로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6	15	일반도로	도로 (중로1-401) 상암동 1183 (중로1-401) 상암동 1178 (중로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7	15	일반도로	도로 (중로1-26) 상암동 1153 (중로1-401) 상암동 495 (중로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1	15	일반도로	도로 (중로1-2) 상암동 산14-8 (중로1-2) 상암동 136-4 (중로2-2)	202	3,084.3	-	-	-	-	-	202	3,084.3	-	-	-	-	-	-	-	-	-
기정	중로	2	2	15	일반도로	도로 (대로3-3) 상암동 170-3 (대로3-3) 상암동 산11-1 (대로3-2)	164	2,523.6	-	-	-	-	-	164	2,523.6	-	-	-	-	-	-	-	-	-
기정	중로	2	3	15	일반도로	도로 (대로1-1) 상암동 369 (대로1-1) 상암동 251-13 (대로3-1)	265	4,337.5	-	-	-	-	-	265	4,337.5	-	-	-	-	-	-	-	-	-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도로 (대로1-1) 상암동 368-2 (대로1-1) 상암동 251-45 (대로3-1)	253	4,170.3	-	-	-	-	-	253	4,170.3	-	-	-	-	-	-	-	-	-
기정	중로	2	5	15	일반도로	도로 (대로1-1) 상암동 304 (대로1-1) 상암동 308-3 (대로1-1)	250	3,821.9	-	-	-	-	-	250	3,821.9	-	-	-	-	-	-	-	-	-
기정	중로	2	6	15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 (대로1-1) 상암동 202-4 (대로1-1) 상암동 9-10 (대로3-1)	297	4,456	-	-	-	-	-	297	4,456.0	-	-	-	-	-	-	-	-	자전거도로 포함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구분	등급	규모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비 고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기정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80	797.3	-	-	-	-	-	-	80	797.3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기정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8-9 (중로 2-1)	75	749.0	-	-	-	-	-	-	75	749.0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기정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기정	소로	2	1	8	일반 도로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	-	-
기정	소로	2	2	8	일반 도로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99	908.0	-	-	-	-	-	-	-	-	-	-	99	908.0	-	-	-	-	-
기정	소로	2	3	8	일반 도로	상암동 334 (중로 1-4)	상암동 337-1 (중로 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	-	-
기정	소로	2	4	8	일반 도로	상암동 431-1 (중로 1-6)	상암동 448 (중로 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	-	-
기정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6-1 (중로 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	-	-
기정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상암동 1533 (중로 1-401) 상암동 1280-1)	상암동 1258 (중로 2-404) 상암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	-	-

구분	구도		시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비 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20	122.4	-	-	-	-	-	-	-	-	-	-	-	-	-
기정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4-58 (대3-30)	상암동 34-7	1	5.2	-	1	5.2	-	-	-	-	-	-	-	-	-	-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	42	259.6	-	-	-	-	-	-	-	-	-	-
기정	소로	3	6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	72	454.8	-	-	-	-	-	-	-	-	-	-
기정	소로	3	7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57-1 (중로1-4) (소로2-3)	상암동 357 (소로2-3)	42	166.4	-	-	42	166.4	-	-	-	-	-	-	-	-	-
기정	소로	3	8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81.4	-	-	21	81.4	-	-	-	-	-	-	-	-	-
기정	소로	3	9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60	362.0	-	-	60	362.0	-	-	-	-	-	-	-	-	-
기정	소로	3	10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82.0	-	-	-	64	382.0	-	-	-	-	-	-	-	-
기정	소로	3	11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72-1 (대로1-1)	상암동 695	220	892.5	-	-	-	-	-	220	892.5	-	-	-	-	-	-
기정	소로	3	1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11.1	-	-	-	-	105	611.1	-	-	-	-	-	-	-
기정	소로	3	13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00-2	상암동 300-2	8.5	34.3	-	-	8.5	34.3	-	-	-	-	-	-	-	-	-
기정	소로	3	14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7-1	상암동 197-1	96.53	965.3	-	-	-	96.53	965.3	-	-	-	-	-	-	-	-
기정	소로	3	15	2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19.5	39.9	-	-	-	-	19.5	39.9	-	-	-	-	-	-	-
기정	소로	3	16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91	상암동 91	4	24.4	-	-	-	-	4	24.4	-	-	-	-	-	-	-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1	기정	상암동 1267-1전 일원	2,375.6	2,375.6	-	-	-	-	-	-	
2	기정	상암동 8-8전 일원	3,623.6	-	-	-	3,623.6	-	-	-	
3	기정	상암동 산22임 일원	2,342.0	-	-	2,342.0	-	-	-	-	
4	기정	상암동 130-3답 일원	1,908.0	-	-	-	1,908.0	-	-	-	

(3)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9,456.5	-	-	-	-	9,456.5	-	-	
1	기정	상암동 694-1답 일원	4,986.2	-	-	-	-	4,986.2	-	-	
2	기정	상암동 696전 일원	4,470.3	-	-	-	-	4,470.3	-	-	

(4) 철도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662.7	236.6	-	-	-	-	-	1,426.1	
1	기정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	-	-	-	-	-	1,426.1	
2	기정	상암동 1270답 일원	236.6	236.6	-	-	-	-	-	-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863.5	468.6	-	-	-	-	-	2,394.9	-
1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	-	-	-	-	-	2,394.9	
2	기정	상암동 24-12대 일원	468.6	468.6	-	-	-	-	-	-	

(2)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	149,250.2		
상암동근린공원	소계	기정	-	163,536.7	-	-	-	14,286.5	-	-	-	149,250.2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	-	-	149,250.2	
		2	기정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	-	14,286.5	-	-	-	-	
	어린이공원	소계	기정	-	7,434.6	2,896.8	1,511.3	3,026.5	-	-	-	-	-	
		1	기정	상암동 1282 대 일원	2,896.8	2,896.8	-	-	-	-	-	-	-	
		2	기정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	-	-	-	-	-	
		3	기정	상암동 154-5대 일원	1,522.2	-	-	1,522.2	-	-	-	-	-	
		4	기정	상암동 462-2전 일원	1,504.3	-	-	1,504.3	-	-	-	-	-	
	주 제 근린공원	민화공원	소계	기정	-	14,285.8	-	-	-	14,285.8	-	-	-	-
1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	-	4,630.7	-	-	-	-	
2			기정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	-	3,828.6	-	-	-	-	
3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	-	3,154.7	-	-	-	-	
4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	-	2,671.8	-	-	-	-	

(3)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총 계	기정	-	76,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정수면내 녹지	소계	기정	29,856.2	15,250.5	11,355.0	461.3	1,669.9	1,119.5	-	-	
	1	기정	상암동 산4-185임 일원	15,250.5	15,250.5	-	-	-	-	-	
	2	기정	상암동 산4-1임 일원	5,768.8	-	5,768.8	-	-	-	-	
	3	기정	상암동 34-15대 일원	1,620.6	-	1,620.6	-	-	-	-	
	4	기정	상암동 산4-142임 일원	3,540.0	-	3,540.0	-	-	-	-	
	5	기정	상암동 34-27대 일원	425.6	-	425.6	-	-	-	-	
	6	기정	상암동 136-5전 일원	335.4	-	-	-	335.4	-	-	
	7	기정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3.9	-	-	-	783.9	-	-	
	8	기정	상암동 300-2답 일원	461.3	-	-	461.3	-	-	-	
	9	기정	상암동 444전 일원	1,119.5	-	-	-	-	1,119.5	-	
	10	기정	상암동 869-1답 일원	550.6	-	-	-	550.6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정수면내 녹지	소계	기정	45,646.9	-	7,342.2	1,1747.7	18,540.5	3,133.0	-	4,883.5	
	1	기정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	-	-	-	-	4,883.5	
	2	기정	상암동 37-23대 일원	808.6	-	808.6	-	-	-	-	
	3	기정	상암동 128-1답 일원	736.0	-	736.0	-	-	-	-	
	4	기정	상암동 126-7전 일원	353.6	-	353.6	-	-	-	-	
	5	기정	상암동 126-2전 일원	941.2	-	941.2	-	-	-	-	
	6	기정	상암동 55-7전 일원	829.4	-	829.4	-	-	-	-	
	7	기정	상암동 1538-6답 일원	3,673.4	-	3,673.4	-	-	-	-	
	8	기정	상암동 92전 일원	987.4	-	-	-	987.4	-	-	
	9	기정	상암동 87-8대 일원	428.2	-	-	-	428.2	-	-	
	10	기정	상암동 97-1대 일원	481.5	-	-	-	481.5	-	-	
	11	기정	상암동 214-2전 일원	1,794.8	-	-	1,794.8	-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2	기정	상암동 371-1답 일원	1,180.7	-	-	1,180.7	-	-	-	-	
	13	기정	상암동 360-1답 일원	1,189.3	-	-	1,189.3	-	-	-	-	
	14	기정	상암동 320전 일원	5,894.6	-	-	2,761.6	-	3,133.0	-	-	
	15	기정	상암동 478-14잡 일원	3,181.6	-	-	3,181.6	-	-	-	-	
	16	기정	상암동 134-4전 일원	540.4	-	-	-	540.4	-	-	-	
	17	기정	상암동 200-4전 일원	389.4	-	-	-	389.4	-	-	-	
	18	기정	상암동 201전 일원	1,273.1	-	-	-	1,273.1	-	-	-	
	19	기정	상암동 251-29답 일원	857.6	-	-	-	857.6	-	-	-	
	20	기정	상암동 251-4답 일원	822.7	-	-	-	822.7	-	-	-	
	21	기정	상암동 274-2전 일원	850.6	-	-	-	850.6	-	-	-	
	22	기정	상암동 293답 일원	877.8	-	-	-	8,77.8	-	-	-	
	23	기정	상암동 223답 일원	3,506.7	-	-	-	3,506.7	-	-	-	
	24	기정	상암동 172-6답 일원	1,341.8	-	-	-	1,341.8	-	-	-	
	25	기정	상암동 173답 일원	1,471.7	-	-	-	1,471.7	-	-	-	
	26	기정	상암동 369답 일원	1,150.7	-	-	-	1,150.7	-	-	-	
	27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1,458.9	-	-	-	1,458.9	-	-	-	
	28	기정	상암동 302-7답 일원	1,456.5	-	-	-	1,456.5	-	-	-	
	29	기정	상암동 794대 일원	645.5	-	-	-	645.5	-	-	-	
	30	기정	상암동 140-2전 일원	629.5	-	-	629.5	-	-	-	-	
	31	기정	상암동 산14-29임 일원	1,010.2	-	-	1,010.2	-	-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계	기정	-	3,917.0	-	-	316.0	-	-	3,601.0	-
1	기정	상암동 442-9천 일원	3,601.0	-	-	-	-	-	3,601.0	-
2	기정	상암동 산26-51임 일원	316.0	-	-	316.0	-	-	-	-

(2) 공동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규 모			규 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대로 1-1, 대로3-30, 대로3-3	2,468.0m	-	2,468.0m	A-1, A-2, A-3 TYPE B TYPE, C TYPE	공동구
	상암동 24-68임 일원	512.6㎡	-	512.6㎡	-	1공구 (관리사무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및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	-	-	-	-	-	211,405.8	2002년월드 컵주경기장

(2)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1	기정	상암동 8-8전 일원	261.5	-	-	-	261.5	-	-	-	
2	기정	상암동 7-1대 일원	883.1	-	-	-	883.1	-	-	-	
3	기정	상암동 333답 일원	868.2	-	-	868.2	-	-	-	-	
4	기정	상암동 431-1전 일원	949.6	-	-	949.6	-	-	-	-	
5	기정	상암동 441-3전 일원	7,114.0	-	-	-	-	-	7,114.0	-	

(3) 교육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1	기정	상암동 119학 일원	11,599.0	-	11,599.0	-	-	-	-	-	초
2	기정	상암동 168-1대 일원	10,989.2	-	-	10,989.2	-	-	-	-	중
3	기정	상암동 355-1답 일원	10,872.4	-	-	10,872.4	-	-	-	-	고
4	기정	상암동 356-2전 일원	10,201.8	-	-	10,201.8	-	-	-	-	초2
5	기정	상암동 309-2대 일원	13,536.1	-	-	-	13,536.1	-	-	-	각종학교1 사업명칭 : 서울일본인학교 (Japan School in Seoul) 시 행 자 :서울자판클럽 (Seoul Japan Club)
6	기정	상암동 309-2전 일원	9,975.1	-	-	-	9,975.1	-	-	-	각종학교2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3,000.3	-	-	-	89.9	-	2,910.4	-	-	
1	기정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2,910.4	-	-	-	-	-	2,910.4	-	-	
2	기정	상암동 205-3전 일원	89.9	-	-	-	89.9	-	-	-	-	

바) 방재시설

(1) 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697전 일원	1,257.0	-	-	-	-	1,257.0	-	-	

4)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 모 (전용면적)	구성비 (%)	계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면적(㎡)	건설호수	층수	용적율	면적(㎡)	건설호수	층수	용적율	면적(㎡)	건설호수	층수	용적율	면적(㎡)	건설호수	층수	용적율	
총 계	-	100.0	261,288.4	5,594	-	-	72,336.7	2,017	-	-	179,666.4	3,254	-	-	9,285.3	323	-	-	
60㎡이하	소 계	30.8	80,513.2	2,317	-	-	44,657.9	1,477	-	-	35,855.3	840	-	-	-	-	-	-	
	블록1	60㎡이하	22,132.6	820	고층	250	22,132.6	820	고층	250	-	-	-	-	-	-	-	-	
	블록2		22,525.3	657	"	250	22,525.3	657	"	250	-	-	-	-	-	-	-	-	
	블록8		35,855.3	840	"	160	-	-	-	-	35,855.3	840	고층	160	-	-	-	-	
60㎡초과	소 계	65.6	171,489.9	2,954	-	-	27,678.8	540	-	-	143,811.1	2,414	-	-	-	-	-	-	
	블록3	60㎡초과~85㎡이하	27,678.8	540	"	220	27,678.8	540	고층	220	-	-	-	-	-	-	-	-	
	블록4	소 계	36,294.2	761	"	250	-	-	-	-	36,294.2	761	고층	250	-	-	-	-	
		60㎡초과~85㎡이하	27,997.0	605	"	"	-	-	-	-	27,997.0	605	"	"	-	-	-	-	
		85㎡초과	8,303.0	156	"	"	-	-	-	-	8,303.0	156	"	"	-	-	-	-	
	블록5	소 계	20,872.0	436	"	245	-	-	-	-	20,872.0	436	"	245	-	-	-	-	
		60㎡초과~85㎡이하	14,899.0	329	"	"	-	-	-	-	14,899.0	329	"	"	-	-	-	-	
		85㎡초과	5,988.0	107	"	"	-	-	-	-	5,988.0	107	"	"	-	-	-	-	
	블록6	소 계	37,815.2	484	"	165	-	-	-	-	37,815.2	484	"	165	-	-	-	-	
		60㎡초과~85㎡이하	10,684.0	158	"	"	-	-	-	-	10,684.0	158	"	"	-	-	-	-	
		85㎡초과	27,143.0	326	"	"	-	-	-	-	27,143.0	326	"	"	-	-	-	-	
	블록7	소 계	48,829.7	733	"	180	-	-	-	-	48,829.7	733	"	180	-	-	-	-	
		60㎡초과~85㎡이하	36,151.0	571	"	"	-	-	-	-	36,151.0	571	"	"	-	-	-	-	
		85㎡초과	12,677.0	162	"	"	-	-	-	-	12,677.0	162	"	"	-	-	-	-	
40㎡초과	복합4	40㎡초과	9,285.3	323	"	800	-	-	-	-	-	-	-	-	9,285.3	323	고층	800	

나) 단독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상암동 8대 일원	20.5	-	20.5	-	-	-	-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4,781.4	1,101.9	-	3,679.5	-	-	-	-	
1	기정	상암동 24-70임 일원	1,101.9	1,101.9	-	-	-	-	-	-	
2	기정	상암동 357전 일원	510.2	-	-	510.2	-	-	-	-	
3	기정	상암동 336-2전 일원	481.5	-	-	481.5	-	-	-	-	
4	기정	상암동 333-1답 일원	466.5	-	-	466.5	-	-	-	-	
5	기정	상암동 449-1전 일원	2,221.3	-	-	2,221.3	-	-	-	-	

라) 상업용지

(1)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50,931.4	12,029.5	-	-	138,901.9	-	-	-	
1	기정	상암동 1271답 일원	6,492.5	6,492.5	-	-	-	-	-	-	
2	기정	상암동 1270답 일원	5,537.0	5,537.0	-	-	-	-	-	-	
3	기정	성산동 76-1전 일원	6,484.9	-	-	-	6,484.9	-	-	-	
4	기정	상암동 100전 일원	6,605.0	-	-	-	6,605.0	-	-	-	
5	기정	상암동 산11-3임 일원	3,366.9	-	-	-	3,366.9	-	-	-	
6	기정	상암동 11-1임 일원	4,519.7	-	-	-	4,519.7	-	-	-	
7	기정	상암동 87-1대 일원	5,637.5	-	-	-	5,637.5	-	-	-	
8	기정	성산동 산14-50임 일원	2,911.4	-	-	-	2,911.4	-	-	-	
9	기정	상암동 139-3전 일원	3,937.2	-	-	-	3,937.2	-	-	-	
10	기정	상암동 136-3전 일원	5,653.7	-	-	-	5,653.7	-	-	-	
11	기정	상암동 199-7전 일원	3,839.0	-	-	-	3,839.0	-	-	-	
12	기정	상암동 202-8답 일원	5,527.7	-	-	-	5,527.7	-	-	-	
13	기정	상암동 224-3답 일원	19,110.4	-	-	-	19,110.4	-	-	-	
14	기정	상암동 182-7답 일원	9,864.2	-	-	-	9,864.2	-	-	-	
15	기정	상암동 174-4답 일원	4,985.3	-	-	-	4,985.3	-	-		
16	기정	상암동 258-3답 일원	2,078.2	-	-	-	2,078.2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7	기정	상암동 258-4답 일원	2,077.9	-	-	-	2,077.9	-	-		
18	기정	상암동 368-1답 일원	4,734.0	-	-	-	4,734.0	-	-		
19	기정	상암동 258-7답 일원	1,972.9	-	-	-	1,972.9	-	-		
20	기정	상암동 280-3답 일원	1,972.9	-	-	-	1,972.9	-	-		
21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4,929.4	-	-	-	4,929.4	-	-		
22	기정	상암동 278-3답 일원	2,054.5	-	-	-	2,054.5	-	-		
23	기정	상암동 290-1답 일원	2,054.5	-	-	-	2,054.5	-	-		
24	기정	상암동 131-3답 일원	2,874.2	-	-	-	2,874.2	-	-		
25	기정	상암동 211-1전 일원	9,536.7	-	-	-	9,536.7	-	-		
26	기정	상암동 294대 일원	8,686.8	-	-	-	8,686.8	-	-		
27	기정	상암동 278답 일원	7,142.7	-	-	-	7,142.7	-	-		
28	기정	상암동 261답 일원	6,344.3	-	-	-	6,344.3	-	-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6,022.5	20,644.1	-	-	5,378.4	-	-	-	
1	기정	상암동 1185답 일원	12,700.3	12,700.3	-	-	-	-	-	-	
2	기정	상암동 494-1대 일원	-	-	-	-	-	-	-	-	
3	기정	성산동 494-7대 일원	7,943.8	7,943.8	-	-	-	-	-	-	
4	기정	상암동 257전 일원	5,378.4	-	-	-	5,378.4	-	-	-	

(3) 숙박업무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34,184.5	-	-	-	34,184.5	-	-	-	
1	기정	상암동 78-5답 일원	30,777.4	-	-	-	30,777.4	-	-	-	
2	기정	상암동 290답 일원	3,407.1	-	-	-	3,407.1	-	-	-	

(4) 상업위락용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251-31대 일원	7,212.0	-	-	-	7,212.0	-	-	-	

마)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1	기정	상암동 64-4전 일원	2,448.9	-	2,448.9	-	-	-	-	-	
2	기정	상암동 43-2대 일원	15,458.3	-	15,458.3	-	-	-	-	-	
3	기정	상암동 442-4전 일원	3,192.4	-	-	-	-	3,192.4	-	-	
4	기정	상암동 335-2답 일원	991.3	-	-	991.3	-	-	-	-	

바) 종교시설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1	기정	상암동 산4-204임 일원	240.1	240.1	-	-	-	-	-	-	
2	기정	상암동 64-3대 일원	1,228.1	-	1,228.1	-	-	-	-	-	
3	기정	상암동 1267-1전 일원	1,050.7	1,050.7	-	-	-	-	-	-	
4	기정	상암동 396전 일원	444.1	-	-	444.1	-	-	-	-	
5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917.2	-	-	-	-	1,917.2	-	-	존치
6	기정	상암동 334답 일원	753.8	-	-	753.8	-	-	-	-	
7	기정	상암동 449-9전 일원	983.5	-	-	983.5	-	-	-	-	
8	기정	상암동 443전 일원	609.9	-	-	-	-	609.9	-	-	
9	기정	상암동 1542-2잡 일원	595.9	-	-	595.9	-	-	-	-	
10	기정	상암동 352-27임 일원	594.3	-	-	594.3	-	-	-	-	
11	기정	상암동 273-1철 일원	654.5	-	-	-	654.5	-	-	-	

사) 도시형공장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269-4답 일원	17,024.7	-	-	-	17,024.7	-	-	-	지상권설정 (507㎡)

아) 차고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6,901.6	-	-	-	-	6,901.6	-	-	
1	기정	상암동 459-4전 일원	1,928.1	-	-	-	-	1,928.1	-	-	
2	기정	상암동 470전 일원	1,523.7	-	-	-	-	1,523.7	-	-	
3	기정	상암동 471전 일원	1,827.1	-	-	-	-	1,827.1	-	-	
4	기정	상암동 693-2전 일원	1,622.7	-	-	-	-	1,622.7	-	-	

자) 가스충전소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475전 일원	1,614.5	-	-	-	-	1,614.5	-	-	

차) 교육연구시설용지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182-3답 일원	7,878.5	-	-	-	7,878.5	-	-	-	

카) 방송시설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34,270.1	-	-	-	34,270.1	-	-	-	
1	기정	상암동 183-5답 일원	21,700.3	-	-	-	21,700.3	-	-	-	
2	기정	상암동 226-2답 일원	12,569.8	-	-	-	12,569.8	-	-	-	

타) 문화 및 집회·업무시설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성산동 515-19답 일원	35,212.8	35,212.8	-	-	-	-	-	-	중소기업문 화 콘텐츠센터

파) 문화시설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하)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360-6대 일원	1,463.1	-	-	1,463.1	-	-	-	-	청소년 문화의집

가)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상암동 207-1대 일원	15,232.7	-	-	-	15,232.7	-	-	-	

너)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015.7	-	885.7	1,130.0	-	-	-	-	
1	기정	상암동 66-6대 일원	885.7	-	885.7	-	-	-	-	-	
2	기정	상암동 449-4전 일원	1,130.0	-	-	1,130.0	-	-	-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c1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1,2층) [A2, B1, B2, B3, B4(1), B6(1), C, D, E1, E2의 건축물 저층부 구간 (1,2층)]	◦저층부 용도1 (건축물저층부구간 1, 2층 연면적의 70% 이상)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저층부 용도1 예시 - 저층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 전시시설 및 공연장 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 관련 시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정보안내소 등 - 보행자의 가로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 - 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로 볼 수 없음. 또한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도 제외 ◦저층부 용도2 (건축물저층부구간 1, 2층 연면적의 30% 미만) - 주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용도 ◦불허용도 - 저층부 용도이외의 용도	
b1	C(3,5), E3(3) (공공지원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D(4) (공공지원업무)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b3	A2, B4(2,3,4), B5, B6(2,3,4), D(3), E1, E2(1,2), E3(1,2), I1, I2, B1, B2 (첨단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B4-2 (첨단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방송통신시설 중 '마' 목(데이터센터)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D1-1, D1-2 E2-3 (첨단업무)	*지정용도(연면적의 70%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 (공연장), '라' 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목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방송통신시설 중 '가' 목(방송국)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b4	F(2) (일반업무)	*권장용도 - 업무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제한용도(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c2	B6(1) (상업업무)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나' 목(소매시장) 및 '다' 목(상점 등) - 업무시설 -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3·14, 15 (상업업무)	◦ 권장용도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 의료시설 중 '가' 목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위락시설 중 '다' 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및 '라' 목(전시장) ※15는 최소5% 이상 필수 도입	
a2	B3 (상업위락)	◦지정용도 (연면적의 50% 이상)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쇼핑, 오락, 레저 등 관련 위락시설(UEC)	
d1	B4(1) (숙박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60% 이상)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목(공연장), '다' 목(집회장), '마' 목(전시장)	
d2	F(1) (숙박업무)	◦지정용도(연면적의 50% 이상)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목(공연장), '다' 목(집회장), '마' 목(전시장) ◦제한용도(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e1	C(4) (교육연구)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 업무시설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사술소 -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e2	D(2-1)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방송통신시설 중 '가' 목(방송국)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D(2-2)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방송통신시설 중 '가' 목(방송국)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f1	C(1, 2) (방송시설)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공공용시설 중 '마' 목(방송국) *불허용도 - 위락시설(유기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b4, d2	F1, F2 (합필 개발시)	기정 ◦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 숙박시설(최소 20%이상)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5%이상)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 기타 지정용도(최소 20%이상)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오피스텔 제외),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연구소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 불허용도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변경 ◦ 지정용도(연면적의 50%이상) 1) 숙박시설(최소 12%이상) - 일반숙박시설(호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 “기타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건립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2) 문화 및 집회시설(최소 3%이상) - 국제컨벤션(필수 도입시설),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전시장,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 “국제컨벤션(필수도입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3) 기타 지정용도(최소 30%이상) -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에는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은 불가 ◦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 기능포함) ◦ 불허용도 -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구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a1	A3 (주상복합)	◦관장용도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 부분의 면적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 목(집회장)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사술소 -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공용시설	
g1	G(1) (도시형공장)	◦지정용도 - 공장(「DMC 유치업종」)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h1	G(2), I6(1), J(2), O1(1,7,8,11), Q(1) (종교시설)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h1	O1(10) (종교시설)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가' 목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서울시 고시 제2013-295 호 (2013.9.12.) 반영
	O1(2) (존치종교시설)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종교집회장 시설물중 당초 존치목적(불상, 법당, 창고)과 무관한 주민 혐오시설(봉안시설 등)의 신축 불허 ※해원정사 존치의 근거인 서울시 『존치시설을 부지의 처리 및 공급지침』 제15조 "본 지침에 의하여 공급되는 존치시설물 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규정에 의함	
h2	L(1) (종교시설)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	K(1,2),L(2),M(1), N(1),O1(3,9),P(1) (공동주택)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주택건설촉진법 적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j	J(1), O1(4,5,6),O2(1) (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k	R(5) (가스충전소)	◦지정용도 -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I	R(1,2,3,4) (차 고 지)	◦지정용도 - 택시차고지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m	S (전시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공연장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가' 목(방송국) 및 '다' 목(촬영소)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공청사	파1 (파출소)	◦지정용도 - 파출소 및 그 부속건물	
	동1 (동사무소)	◦지정용도 - 동사무소 및 그 부속건물	
	우1 (우체국)	◦지정용도 - 우체국 및 그 부속건물	
	소 (소방파출소)	◦지정용도 -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건물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	◦지정용도 - 운전면허시험장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주(1~4) (주차장)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건물(주차장법 적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운동장 및 시장	운동장 및 시장	◦지정용도 - 운동장, 시장과 그 부속건물	
문화 시설	문화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 목(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 치 원	유치원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위 치 및 시 설 명	계 획 내 용	비 고
교육 시설	초1~2 (초등학교)	◦지정용도 - 초등학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중 (중학교)	◦지정용도 - 중학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고 (고등학교)	◦지정용도 - 고등학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각종학교1~2 (b2)	◦지정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사회 복지 시설	복지1~4 (사회복지시설)	◦지정용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속건물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	◦지정용도 -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속건물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정류장1~2 (자동차정류장)	◦지정용도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전기공급 설비	전기공급설비1~2	◦지정용도 - 전기공급설비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철도시설	철도시설1~2	◦지정용도 - 철도시설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하수도 시설	하수도시설1~2	◦지정용도 - 하수도시설 및 그 부속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구	공동구1 (관리사무소)	◦지정용도 - 공동구 및 관리사무소 기타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1) 괄호안의 숫자는 획지번호임. 이하 같음

주2) 중심활동가로변의 저층부(1층 및 2층)의 구체적 위치는 결정도면 참조

주3)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시되는 「DMC 택지공급지침」의 규정에도 적합하게 하여야 함

주4) 「DMC 유치업종」은 “별첨” 참조

주5) 권장용도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연면적의 50% 이상을 당해 용도(권장용도가 2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로 할 경우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함

주6)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의 면적 산정시, 연면적은 주차장, 기계실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주7)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지정된 용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에서 정하는 용도를 적용할 수 있음

주8) 공공지원업종, 교육연구, 방송시설, 첨단업무는 외국기업, 외국연구소의 경우 지정용도를 연면적의 60%이상으로 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1	D(4) (공공 지원 업무)	◦ 지정용도 폐지 ◦ 불허용도 : 변경없음	◦ 홍보관의 이용 기한 만료로 활용 목적 상실에 따른 용도 변경 ◦ 공공재산의 재정적 효율화와 1인 가구 공급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용도 폐지
e2	D(2-1)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	◦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 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목(공연장), '라' 목(전시장) - 방송통신시설중 '가' 목(방송국) (신설) ◦ 불허용도 : 변경없음	◦ 국내외 M&E 시장 성장과 DMC 산업 특색 강화를 위한 용도 도입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주상복합	A3	60% 이하	800% 이하	
공공지원업무	E3(3)	"	700% 이하	
	C(3), D(4), C(5)	"	800% 이하	
첨단업무	B4(2,3,4), B5, B6(2,3), E3(1,2), I1, I2	"	600% 이하	
	B6(4)	"	700% 이하	
	A2, E1, E2, D(1,3), B1, B2	"	800% 이하	
일반업무	F(2)	"	1,000% 이하	
상업업무	B6(1)	"	400% 이하	
	I3, I4, I5	"	600% 이하	
상업위락	B3	"	800% 이하	
숙박업무	B4(1)	"	400% 이하	
	F(1)	"	1,000% 이하	
교육연구	C(4)	"	800% 이하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	D(2)	"	800% 이하	
방송시설	C(1)	"	600% 이하	
	C(2)	"	800% 이하	
도시형공장	G(1)	"	350% 이하	
공동주택	K(1,2), L(2), M(1), N(1), O1(3,9), P(1)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이하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하	
근린생활시설	J(1), O1(4,5,6), O2(1)	"	"	
종교시설	G(2), I6, J(2), L(1), O1(1,7,8,10,11), Q(1)	"	"	
		30% 이하	60% 이하	
	O1(2) (존치종교시설)	※해원정사 존치의 근거인 서울시 『존치시설물 부지의 처리 및 공급지침』 제15조 “본 지침에 의하여 공급되는 존치시설물 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규정에 의함		
차고지	R(1,2,3,4)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이하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하	

주1) 도시계획조례 제55조 3항 규정을 적용(주거용도 등의 복합에 따른 용적률 적용)

주2) F(1), F(2)는 합필 시 용적률 1,000% 이하 적용

구 분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가스충전소		R(5)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이하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하	
문화시설		O1(12)	"	"	
전시업무		S	"	"	
공공청사	등사무소	등1	"	"	
	파출소	파1	"	"	
	우체국	우1	"	"	
	소방파출소	소	"	"	
	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학교	초등학교	초1~2	"	"	
	중학교	중	"	"	
	고등학교	고	"	"	
	각종학교	각종학교1~2	60%이하	500% 이하	
사회복지시설		복지1~4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이하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하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1~2	"	"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1~2	"	"	
운동장 및 시장		운동장 및 시장	"	"	
철도시설		철도시설1~2	"	"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1~2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공동구		공동구1 (관리사무소)	"	"	
유치원		유치원1~2	"	"	

주) 도시계획조례 제55조 3항 규정을 적용(주거용도 등의 복합에 따른 용적률 적용)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최 고 높 이	비 고
주상복합	A3	100m 이하	
공공지원업무	C(5), E3(3)	100m 이하	
	C(3)	80m 이하	
	D(4)	60m 이하	
첨단업무	B4(3), B5(1,2)	60m 이하	
	B6(2)	61.5m 이하	
	B4(2), B6(3)	80m 이하	
	A2, B4(4), B5(3), B6(4), B1, B2	100m 이하	
	E2, E3(1,2), I1, I2	100m 이하 (대지분할시, 내부획지는 60m 이하)	
	D(1,3), E1	120m 이하	
일반업무	F(2)	100m 이하 단, F(1), F(2) 합필 개발시 640m(첨탑포함)	
상업업무	B6(1)	80m 이하 (대지분할시, 내부획지는 60m 이하)	
	I3, I4, I5	100m 이하 (대지분할시, 내부획지는 60m 이하)	
상업위락	B3	100m 이하	
숙박업무	B4(1)	80m 이하 (대지분할시, 내부획지는 60m 이하)	
	F(1)	200m 이하 단, F(1), F(2) 합필 개발시 640m(첨탑포함)	
교육연구	C(4)	100m 이하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	D(2)	120m 이하	
방송시설	C(1, 2)	100m 이하	
도시형공장	G(1)	40m 이하	
공동주택	K(1,2), L(2), M(1), N(1), O1(3,9), P(1)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최고높이 이하	
근린생활시설	J(1), O1(4,5,6), O2(1)	"	
종교시설	G(2), I6(1), J(2), L(1), O1(1,7,8,10,11), Q(1)	"	
	O1(2) (존치종교시설)	2층 이하의 건축물(부속 시설물 포함) ※해원정사 존치의 근거인 서울시 『존치시설물 부지의 처리 및 공급지침』 제15조 “본 지침에 의하여 공급되는 존치시설물 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규정에 의함	

구 분		위 치	최 고 높 이	비 고
차고지		R(1,2,3,4)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최고높이 이하	
가스충전소		R(5)	"	
문화시설		O1(12)	"	
전사업무		S	"	
공공 청사	동사무소	동1	"	
	파출소	파1	"	
	우체국	우1	"	
	소방파출소	소	"	
	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학교	초등학교	초1~2	"	
	중학교	중	"	
	고등학교	고	"	
	각종학교	각종학교1~2	최고높이 100m 이하	
사회복지시설		복지1~4	건축당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최고높이 이하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1~2	"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1~2	"	
운동장 및 시장		운동장 및시장	"	
철도시설		철도시설1~2	"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1~2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공동구		공동구1 (관리사무소)	"	
유치원		유치원1~2	"	

주1) 대지분할시 내부획지라 함은 대지분할로 인하여 위계가 낮은 도로(폭 20m 이하)에 접하게 되는 획지로서 결정도상에 표현된 획지를 말함

주2)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지정된 최고높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에서 정하는 최고높이를 적용할 수 있음

주3) 최고높이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함

주4) 상기 높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고도제한 등 관련 고도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함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전체	건 축 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 등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함(결정도 참조)	
	건축지정선	◦건축물의 외벽을 가리련히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 건축물의 주벽면이 지정선의 1/2 이상에 접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건축한계선	◦가로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후퇴선으로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벽면지정선	◦건축물의 특정층 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 건축물의 특정층의 벽면이 지정선의 1/2 이상에 접하여야 함. 단, 벽면지정선이 2개면 이상에 접한 경우 각각의 가로의 길이에 1/2이상 접하여야 함. 특정층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층 내지 3층 벽면을 그 대상으로 함	
DMC 계획구역	건 축 물 저층부 구간	◦결정도상에 건축물저층부구간이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할 것. 단, 대지규모 또는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위 치	◦결정도상의 지정된 위치	
	층 수	◦3층 이상~5층 이하.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저층부 전면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후퇴할 것	
	전면길이	◦결정도상의 지정된 건축물저층부구간 길이의 80% 이상일 것. 단, 구간내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자를 위한 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길이에 포함하도록 함	
	기 타	◦건축물 저층부의 구체적인 배치에 관하여는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	
	건물의 방향성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전면가로(폭 20m 이상)의 방향과 일치하게 할 것을 권장함	

(2)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1층의 바닥높이		◦접한보도 또는 도로와 높이를 맞추거나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단, 허가권자가 시설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외벽처리		◦투시벽 : 폭 20m 이상의 가로, 폭 15m 이상 가로의 교차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은 1층 전면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하여야 함. 단,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셔터 : 폭 15m 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부 외관이 일반 아파트형 외관을 지양하도록 할 것(권장)	
	옥상처리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함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함	
DMC 계획구역	외벽처리		◦투시벽 : 폭 20m 이상의 가로, 폭 15m 이상 가로의 교차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은 1·2층 전면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하여야 함. 단,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학교부지는 적용 제외) ◦셔터 : 폭 15m 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부 외관이 일반 아파트형 외관을 지양하도록 할 것(권장)	
	건축물의 외관	저층부 (5층이하)	◦활발한 가로활동을 위하여 규모, 디테일(외관상세) 측면에서 위압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폐쇄감이나 획일적인 외관을 지양할 것 ◦중심활동가로변(건축물저층부공간)은 미디어 스트리트(Media Street)와의 일체적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	
		고층부 6층이상	◦DMC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리 및 금속재료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high-tech) 외관을 표현하도록 할 것	
	구조의 제한		◦건축물에 있어서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로 사용하기 위한 층에 대하여는 층고 3.6m 이상으로 하고, 가구식 구조를 채택하도록 할 것	
	색채		◦DMC도시환경디자인(CI)계획에 의함	
	지하보행통로 설치		◦수색역으로부터 서울라이트 타워간의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비하여 건축물 계획시 지하2층의 바닥 높이를 지하 9m에서 ±1m내외로 맞추어 지하보행로와 무장애 공간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공개공지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위치 : 결정도상의 표시된 곳에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도록 할 것.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각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법 규정을 준수토록 함	
	전면공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중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할 것 ◦대지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주차장, 담장, 계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함(교목의 식재, 벤치 등의 휴게시설, 조명, 장식물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차량진출입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30% 이내일 것) ◦차량진출입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에 산입	
	공공조경	◦가로경관의 향상 및 소음, 공해의 완화를 위해 지정된 위치에 조경 식재하는 공지 ◦결정도상의 표시된 위치에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식재기준에 따라 조성 하도록 하되, 식재면적은 대지로의 차량 및 보행진출입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70% 이상일 것(나머지 면적은 벤치 등의 휴게시설, 조명, 장식물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음) ◦대지로의 차량 및 보행진출입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도록 함	
	공동보행도로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되는 통로로서, 결정도상에 표시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할 것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을 것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되, 장식포장을 권장 ◦차량동선과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나)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가구별 경관계획 ◦질서있는 단지경관과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을 유도하고, 미적인 옥상형태의 처리와 skyline의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한다. ◦공원내에는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조경휴게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한다. 단, DMS 구간내의 근린공원5의 경우에는 DMS 통합가로디자인 세부설계지침에 의한다. ◦가로변 완충녹지, 광장에는 소규모 조경휴게공간(따고라, 의자등)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주변 가로수와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주요가로변 경관계획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도로 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선정토록 한다. 단, DMS 구간내의 보도는 DMS 통합가로디자인 세부설계지침에 의한다.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 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생태면적을 기준 적용 ◦사업지구내 구역별 세부건축계획 수립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 9. 1)' 에 따른 서울특별시 생태면적을 기준 적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DMC 전체	건축물의 이미지 (Image)	◦건축물의 고층부(6층 이상)는 DMC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리 및 금속재료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high-tech) 외관을 표현하도록 할 것 ◦건축물의 저층부(5층 이하)는 활발한 가로활동의 유도할 수 있도록 규모, 디테일(외관상세)의 측면에서 위압감 및 폐쇄감을 주지 않아야 하고 확실적인 외관을 지양할 것 ◦DMC내 건축물은 재료에 있어서 내외부의 경계가 최소화 되는 투명한 재료(유리)의 사용을 권장함	
	랜드마크의 조성	◦F블록은 DMC 남북축의 단부이며, 난지천 및 월드컵공원에 연결되는 곳으로 상암지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조성이 필요한 부지임 ◦이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운용 하도록 함 ◦1번 획지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200m로 하여 높이 및 형태(조형성)에 있어서 랜드마크 성격을 나타내도록 할 것 ◦1번 및 2번 획지의 합침 또는 공동건축을 통하여 상암지구 뿐만아니라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조성을 권장함(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시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에서 정하는 최고높이를 적용할 수 있음)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 건축심의, MA위원회 및 DMC관리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의	
	건축물의 저층부 형성	◦중심활동가로변에 건축물저층부구간의 배치를 지정하고 상가군(Market Place)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DMC의 중심활동공간의 조성을 유도함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참조) ◦주요 간선도로변에 저층부와 고층부의 이원적인 건축선(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하여 가로의 연속성과 고층부의 개방감을 유도함	
	DMC 중심부 (Center of Town) 조성	◦주요 간선가로의 교차부에 지구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를 계획적으로 유도 ◦교차부를 형성하는 각 블록의 각각부에 주요 건축물이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고층부의 건축선 이격을 배제하여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함	
	조명계획	◦건축계획 심의시 별도의 야간 조명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것 ◦Digital IT 및 Media 기술을 활용한 조명계획을 권장함	
	색채	◦DMC도시환경디자인(CI)계획에 의함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DMC 전체	지구 관문 (Gateway) 형성 ◦Symbolic Gateway(근린공원 5) : DMC의 서측 관문으로 중심활동가로축의 단부에 해당함. DMC의 특성을 표현하는 상징탑 등을 포함한 관문 성격의 공원이 되도록 할 것.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은 형태(타워형, 조형성 등) 측면에서 이 관문 성격을 반영토록 할 것 ◦Natural Gateway : DMC의 남북축의 단부로서 랜드마크 건축물 및 좌측의 상암산 공원과 함께 지구의 진입부를 상징할 수 있도록 조형물 등을 조성하고, 난지천 및 월드컵공원과 연결되는 입체통로를 조성하도록 함 ◦Urban Gateway(DMC Square, 광장3, 4) : 미래의 통합수색역사에 대응하는 광장으로서 DMC의 실질적인 관문임. DMC의 특성에 부합하는 광장이어야 하며, 대규모 이용자의 유출입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 인접한 각 대지의 건축물은 배치 및 형태 측면에서 함께 진입부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담장 또는 울타리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시형(높이 1.5m 이하) 또는 식재 담장으로 할 것.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보행자전용도로변에서는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를 금지함	
	옥외광고물 ◦DMC옥외광고물 기본계획 및 DMC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마포구 고시)에 의함	
	가로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등(SF) ◦DMC도시환경디자인(CI)계획에 의함	
	미술 장식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품은 IT 및 Media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치품으로 할 것을 권장함 ◦중심활동가로와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중심활동가로변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Digital Media Street) 계획과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DMC 미술장식품 세부설계지침에 의함	
	정보통신시설 설치계획 ◦DMC 정보통신 가이드라인 세부설계지침에 의함 ◦DMC의 비전과 컨셉에 맞도록 유무선, 방송통신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보통신 시설 설치 ◦지능형건물(IBS) 인증 1등급이상이거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이상, 특등급 권장	
	미디어보드 설치운영 계획 ◦DMS 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설계지침 및 서울 DMC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DMS부분) 미디어파사드 설치 지침에 의함	

다) 교통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차량동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진출입방향이 표시된 대지의 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다만, 공공시설용지에서 시설의 성격상 필요한 비상차량의 진출입은 허용 ◦단지 내부 및 진출입차량 동선은 최소 5m 이상의 회전반경을 확보 ◦차량진출입방향이 표시된 변에서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대지변 길이의 협소 등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차로 단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도록 함 a. 폭 30m 이상의 도로변으로부터 40m 이내의 구간 b. 폭 25m 이상의 도로변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c. 기타의 도로변으로부터 20m 이내의 구간 d.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대지 분할시 각각의 대지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함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대지에서는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진출입구의 설치가 가능함	
	공동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공동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설치구간은 인접대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함.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	
	주차장	◦간선가로(폭 20m 이상)변에의 주차장 노출을 금지함(차폐식재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차단할 것) ◦지하주차장 램프는 주변동선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치 ◦단지내 주동로변, 지하주차장 램프 주변에는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보행동선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보행출입구 조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인 인접가로의 보도 수준이상 재료로 포장하며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인접 공공보행통로와 연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	
DMC 계획구역	저층부 용도의 시설 출입구 설치	◦가로에 면하여 저층부(지상1층) 용도의 시설을 설치시는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설치	

라) 건축기준의 완화 : 변경없음

-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설치시 및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제공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건축물의 높이결정조서의 최고높이 규정 중 “군 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 범위내에서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건축주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기준의 완화	공개공지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허 용 용적률	$\circ [1 + \{ \text{공개공지등 면적} - (\text{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text{대지면적} \} \times \text{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 및 제공시 완화기준	건폐율	$\circ (1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times \text{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건폐율}$	
		용적률	$\circ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alpha) (\alpha : \text{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높이	$\circ (1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times \text{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높이(단, 비행안전고도제한은 그대로 적용함)}$	

마)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선정사유

-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거나, DMC 계획개념의 구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DMC 계획안(Masterplan)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 하도록 함
- 대상 : 선도시설블록(C블록), UEC 역세권블록(D블록), 랜드마크 건축물블록(F블록), 복합 문화·상업블록(I3, I4, I5블록)

(2)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의 작성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창의적인 개발안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DMC 계획안(Masterplan)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내 각각의 획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단, F블록의 2번 획지가 1번 획지와 합병(또는 공동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위치 및 시설명	계 획 내 용	비 고
특 별 계 획 구 역	C, D(1, 2), F I3, I4, I5 (결정도면참조)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의 작성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구」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보다 창의적인 개발안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DMC 계획안(Masterplan)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 ◦특별계획구역내 각각의 획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단, F블록의 2번 획지가 1번 획지와 합병(또는 공동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DMC 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 변경없음

(1)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단위계획”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최초의 계획인 DMC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구현하기 위한 3차원적 도시 관리수단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본 지구단위계획 조서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DMC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내용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시되는 「DMC 택지공급지침」의 규정에도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조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조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 본 조서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제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으로 언급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기타 건축주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해당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른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의 관리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3.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 있어서 분할 가능한 위치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4. “공동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필요에 의하여 공동건축을 허용하는, 규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한다.
5.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는 용도를 말한다.
7.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8. “DMC 택지공급지침”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조성되고 있는 DMC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별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9. “DMC 유치업종”이라 함은 DMC 비전(Vision)의 실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말한다.(부록 참조)
10. “최고높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 의한다.
11. “비행안전고도제한”이라 함은 공항 주위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구역(장애제한표면)이하로 높이규제(해발고도 기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건축물”이라 함은 대지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건축물 중 주된 용도(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정용도 또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건축물 저층부구간”이라 함은 지정된 위치에 저층부(3층 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조성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전면길이는 80% 이상(공개공지, 보행자를 위한 공지 및 필로티 조성구간 포함), 최소폭은 벽면지정선으로부터 고층부 건축한계선까지로 한다. 중심 활동가로변저층부 지정용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연)면적 산정도 벽면지정선으로부터 고층부 건축한계선까지 한다.
14.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15. “고층부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그 선을 넘어서 돌출

- 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6.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외벽이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건축물의(부속 건축물의 벽면이 아닌) 주벽면이 지정선의 1/2이상 접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서 지상 부분이 돌출할 수 없다. 일부층에 대한 필로티(piloti) 처리는 허용하도록 한다.
 17.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특정층 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 건축물의 특정층이 지정선의 1/2 이상 접하여야 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정층을 1층 내지 3층으로 한다.
 18. “차량진출입방향”이라 함은 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이 허용되는 방향을 말한다.
 19.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의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20. “공동주차출입구”라 함은 2 이상의 대지에 차량진출입구 및 일부 주차통로를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는 차량출입구를 말한다.
 21.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및 주건축물로의 보행출입구를 당해 방향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23.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 중 일반 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24. “공공조경”이라 함은 가로경관의 향상 및 소음, 공해의 완화를 위해 대지내의 지정된 위치에 조경 식재하는 공지를 말한다.
 25.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2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9. “DMC 지구단위계획 관리기구”라 함은 DMC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을 다루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3)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를 표현한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반영여부 및 관련부분 상세도
2. 동일 도로에 면한 인접대지들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대지내의 신축건물과 기존 건축물의 입면을 함께 표현한 도면

3. 색채, 마감재료, 광고물 등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인접하여 '미디어 스트리트(Media Street) 계획' 등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련 내용 및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것)
4.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종횡단면도
5. 외부공간 조성계획도
6. 야간조명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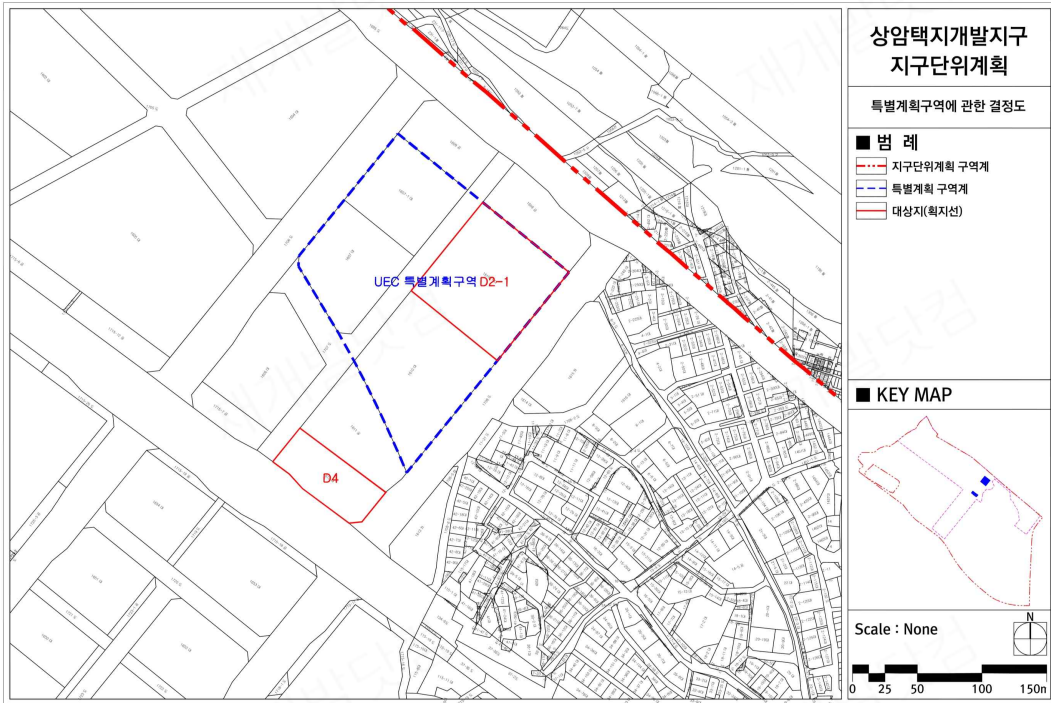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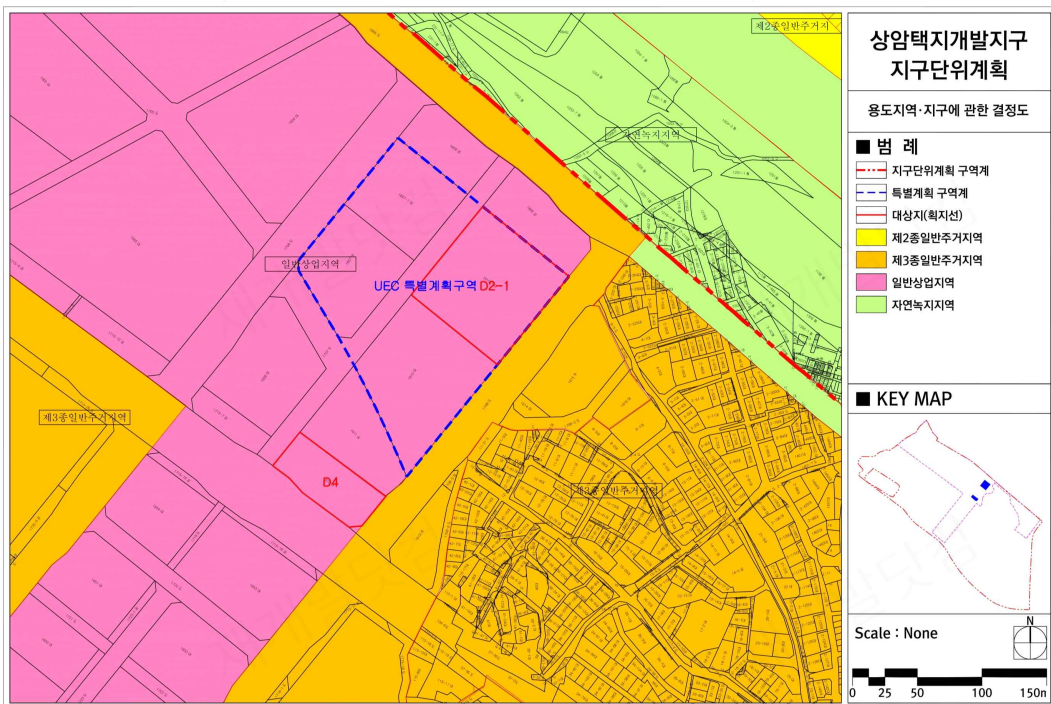
V.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02-2133 -8465)와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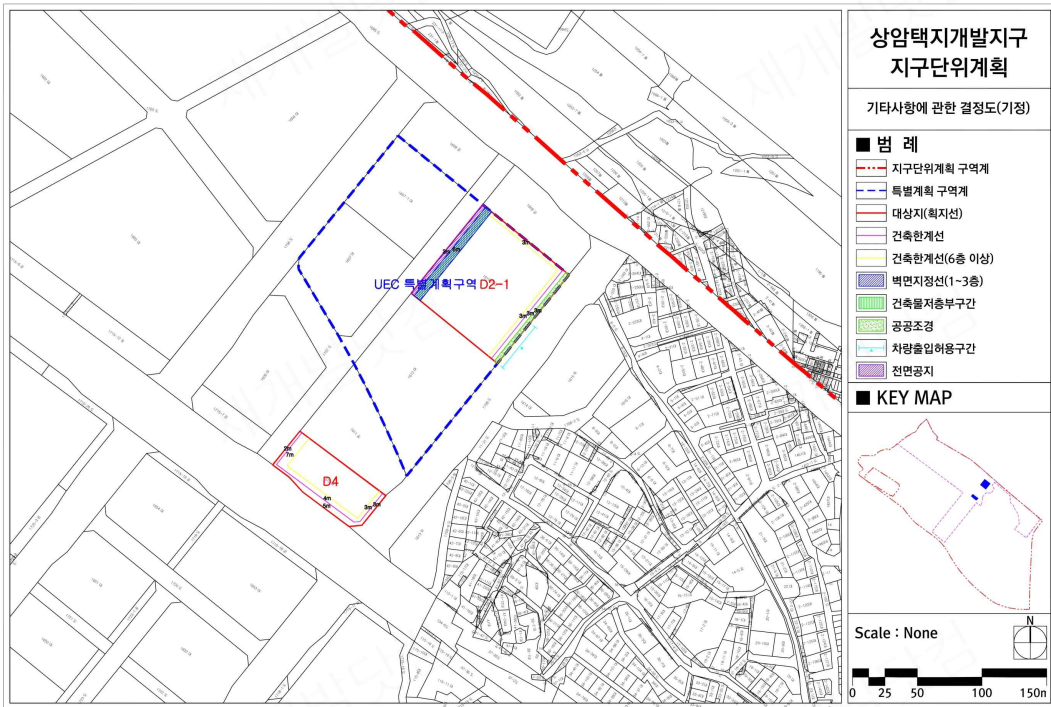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

